

KCOPA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온라인보호부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REPORT

저작권 침해 이슈리포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저작권 침해

온라인보호부 최효빈 주임

I. 들어가며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정의】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스포츠 이벤트 등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콘텐츠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종종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넷플릭스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된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TV 시리즈 부문에서 전 세계 1위로 등극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화제¹⁾가 되었다. 특히, 외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검열로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한된 중국에서 더 글로리의 인기가 치솟으며 다시 한번 중국의 한국 콘텐츠 도둑 시청 문제 또한 논란이 되었다. 당시 ‘더 글로리’는 수십여 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되었는데, 사이트에는 ‘더 글로리’뿐 아니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벌집 막내아들’ 등 앞서 흥행한 국내 작품 역시 유통되어 많은 지적을 낳았다.²⁾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의 OTT³⁾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 최소 5조 원⁴⁾으로 범정부 대책 마련까지 논의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누누티비’와 같은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등장은 기존 다운로드 방식의 침해 유형에서 스마트기기 장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불법으로 콘텐츠를 도둑 시청 할 수 있는 위험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영상, 음악,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불법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로 보호받는 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 배분 구조가 다원화된 영상 콘텐츠 관계자 등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현재 유일한 대응 방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이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가 차단되는 동시에 URL 주소만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즉시 생성하여 며칠이 걸리는 접속차단은 확실한 대응수단이 되고 있지 않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보란 듯이 SNS 계정을 통해 우회 사이트를 안내하는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성 과정과 주요 현황, 저작권 침해와 정부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브라질, 등 38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 스위스, 그리스 등 21개 국가에서 2위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에서 3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23. 3. 14.)
- 2) 보호원이 지난해 9월 3일간 진행한 ‘수리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에 대한 중국 사이트 불법 유통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총 627건의 불법 유통 사례를 확인했다.
- 3) OTT(Over The Top)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네이버 지식백과)
- 4) “피해액 최소 5조원”...방송·영화·OTT 업계, 누누티비 공동고소, ZDNET Korea, 윤상은 기자/2023. 07.10. 최종 열람 (<https://zdnet.co.kr/view/?no=20230308182034>)



II.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생성 과정

국내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가 불법으로 공유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 정부의 ‘국민PC 사업’으로 PC 가구 보급률이 70%를 넘어서고 초고속 인터넷이 가정에 상용화되면서부터이다. 이용자들은 월드와이드웹(WWW)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Web 2.0에 동영상을 볼 수 있는 HTML5 등의 기술이 추가되면서 영상 콘텐츠 또한 쉽게 접하게 되었다. 당시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외는 라이코스, 야후, 알타비스타가 국내는 네이버, 다음, 코리아 등 다양한 검색엔진이 출현하면서 인터넷 정보 검색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었다. 월드와이드웹의 등장으로 와레즈(warez)⁵⁾, 웹하드, 커뮤니티 등에서 게시글을 통해 웹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관리자의 삭제와 차단을 피해 주기적으로 다운로드 주소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금방 폐쇄되었다.⁶⁾ 커뮤니티는 점차 단순 친목의 목적에서 불법 공유의 장으로 변질, 확대되었으며 아예 불법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생기는 등 불법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 이 시기에는 P2P(Peer-to-Peer)를 통한 파일 공유도 이루어졌는데, 분산형 통신 방식인 중앙 서버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들 간에 직접적인 통신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P2P는 2000년 등장한 소리바다⁷⁾를 중심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토렌트 시드 공유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대는 링크를 전용으로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링크를 통해 영상, 음악, 만화, 스포츠 중계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했으며, 이용자들은 커뮤니티보다 보다 편리한 링크 사이트를 점차 이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기기의 발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용자들은 초고속 인터넷으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대용량 콘텐츠를 원활하게 소비, 이전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하였으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 수는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시장이 커진 또 다른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합법 플랫폼 시장과 함께 불법 사이트 시장이 동반 성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지난 5월에 발표한 ‘2023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웹툰 콘텐츠 이용량(정품콘텐츠 + 불법복제물)은 8,285,950개로 전년 대비(7,069,690개) 1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품콘텐츠가 6,673,940개로 전년 대비 17.7% 증가, 불법복제물 역시 1,612,010개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양이 증가한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5) PC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사진 등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불법 취득하여 공유하는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을 의미. 흔히 어둠의 경로로 불리었다.

6)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트 URL만 변경하여 대체사이트를 즉시 생성하여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

7) 200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소리바다는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공유, 저작권 침해 문제로 폐쇄되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가처분이의])



●●● [표] 이용경로별 전체 콘텐츠 이용량⁸⁾

(단위: 개, %)

이용경로	이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량 (개)	전년대비 증감율 (%)	이용량 (개)	전년대비 증감율 (%)	웹툰 포함		웹툰 제외			
						이용량 (개)	전년대비 증감율 (%)	이용량 (개)	전년대비 증감율 (%)		
온라인	유료 전용 온라인 서비스	정품콘텐츠	3,516,244	9.7	3,584,572	1.9	4,406,090	22.9	3,710,414	3.5	
	온라인(e-book, 게임) 판매 사이트	정품콘텐츠	20,474	33.7	22,628	10.5	91,778	305.6	25,070	10.8	
	게임 사설서버(프리서버)	불법복제물	1,342	176.1	1,508	12.4	1,942	28.8	1,942	28.8	
	웹하드·P2P	제휴	정품콘텐츠	48,228	-74.8	46,644	-3.3	25,834	-44.6	12,994	-72.1
		비제휴	불법복제물	232,172	16.7	216,046	-6.9	137,188	-36.5	125,656	-41.8
	커뮤니티(117)	불법복제물	304,886	6.2	308,236	1.1	294,260	-4.5	235,856	-23.5	
	토렌트	불법복제물	128,562	-10.4	119,850	-6.8	87,200	-27.2	80,672	-32.7	
	스트리밍 링크·다운로드 사이트(118)	불법복제물	310,668	-10.3	304,716	-1.9	444,732	45.9	444,732	45.9	
	게임 앱(APP) 마켓	정품콘텐츠	10,210	13.7	10,990	7.1	17,500	60.1	17,500	60.1	
	동영상플랫폼(119)	제휴	정품콘텐츠	1,419,130	10.5	1,487,026	4.8	1,722,114	15.8	1,722,114	15.8
		비제휴	불법복제물	68,492	31.1	72,232	5.5	117,124	62.1	49,324	-31.7
	SNS	제휴	정품콘텐츠	117,264	-	108,012	-7.9	126,120	16.8	66,768	-38.2
		비제휴	불법복제물	262,434	-15.3	262,910	0.2	410,000	55.9	370,424	40.9
	스트리밍 링크	불법복제물	95,006	-5.7	92,580	-2.6	56,234	-39.3	56,234	-39.3	
	IPTV 등	정품콘텐츠	209,208	-14.7	222,978	6.6	131,032	-41.2	131,032	-41.2	
	온라인(웹툰) 출판사 사이트	정품콘텐츠	-	-	-	-	5,952	-	-	-	
	콘텐츠 복제 게시 사이트	불법복제물	-	-	-	-	46,416	-	-	-	
오프라인	노점상	정품	정품콘텐츠	30,696	-51.6	25,781	-16.0	1,032	-96.0	1,032	-96.0
		비정품	불법복제물	9,786	-52.9	14,607	49.3	10,884	-25.5	8,103	-44.5
	실물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정품	정품콘텐츠	135,738	-17.3	146,354	7.8	123,532	-15.6	123,532	-15.6
		비정품	불법복제물	454	65.7	512	12.8	512	0.0	512	0.0
	중고 온라인·오프라인 매장(120)	정품콘텐츠	-	-	-	-	6,786	-	6,786	-	
	오프라인 공식 매장	정품콘텐츠	1,294	71.2	1,992	49.3	1,308	-32.3	1,308	-32.3	
	콘텐츠 이용 전용 공간	정품콘텐츠	13,082	-35.2	13,664	4.4	14,862	8.8	14,862	8.8	
	복사인쇄·제본업소	전자파일	불법복제물	2,542	-17.4	2,442	-3.9	2,424	-0.7	2,424	-0.7
		계본인쇄본	불법복제물	3,606	-3.2	3,530	-2.1	3,094	-12.4	3,094	-12.4
	온라인 소계		6,744,320	5.5	6,860,868	1.7	8,121,516	18.4	7,050,732	2.8	
오프라인 소계		197,198	-28.7	208,822	5.9	164,434	-21.3	164,434	-21.3		
정품콘텐츠 소계		5,521,568	6.2	5,670,521	2.7	6,673,940	17.7	5,833,412	2.9		
불법복제물 소계		1,419,950	-3.2	1,399,169	-1.5	1,612,010	15.2	1,381,754	-1.2		
전체 합계		6,941,518	4.1	7,069,690	1.8	8,285,950	17.2	7,215,166	2.1		

8)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_종합본, 2023, 84p



Ⅲ.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주요 현황

최근 몇 년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 제공과 운영방식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다. 특히,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즉시 URL 주소만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콘텐츠나 링크만 게시하던 방식에서 부가적으로 채팅 기능 추가, 우회사이트 안내 페이지 제공, 접속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모바일앱 제공 등 더 지능화된 사이트 운영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합법 OTT 플랫폼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이트 UI(user interface)를 꾸미는 등 합법 OTT 플랫폼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의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유형 및 운영 방식⁹⁾

링크는 1989년 월드와이드웹의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시스템을 공안 하여 개발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 팀 버너스리에 의해 개발되었다. 월드와이드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이퍼텍스트 기능이다. 이는 링크를 클릭하여 다른 페이지와 연결되는 개념을 뜻하는데 즉, 웹 브라우저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멀티미디어를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기술로 이해하면 된다. 링크의 방식을 구분하자면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눌 수 있다. 단순 링크는 해당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으로 링크를 연결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링크된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특정 웹 페이지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 링크는 프레임링(framing) 기법을 이용한 링크로, 웹 화면을 브라우징 프레임과 타깃 프레임으로 나누어 브라우징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깃 프레임에 다른 웹페이지의 자료가 현시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링크는 웹사이트 내에서 링크를 건 영상, 음악 등의 저작물이 자동으로 실행되거나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한 것을 의미한다. 한때 한글 문서에 임베디드 된 폰트파일로 인한 저작권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링크를 거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링크 유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구분	설명
단순 링크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객체에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
직접 링크	특정 웹 페이지의 특정 섹션이나 콘텐츠에 링크를 설정하는 방식
프레임 링크	웹 페이지의 한 부분을 다른 웹 페이지의 프레임에 삽입하는 방식
임베디드 링크	웹 페이지의 콘텐츠를 다른 웹 페이지에 삽입하는 방식

9) '스트리밍 사이트'의 상위 개념인 '링크 사이트'가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링크 사이트'를 '스트리밍 사이트'로 통칭한다.



다음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목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저작물을 무단 공유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운영자가 합법 플랫폼처럼 이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라는 리스크를 안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 답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형태의 배너광고, 애드네트워크(Ad Network) 광고¹⁰⁾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은 배너를 통한 도박, 성인 사이트를 안내하는 불법 광고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러한 불법 광고를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창출한다. 위에서 언급한 누누티비의 경우 약 2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5조 원의 피해액을 발생, 불법 광고로 333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¹¹⁾ 이러한 어마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대체 사이트를 만들면서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광고에는 도박, 성인 등 유해 사이트 광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사이트(Virus Site) 즉, 웹사이트 자체에 바이러스나 랜섬웨어를 심은 불법 사이트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바이러스 사이트를 이용할 시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 탈취를 당하거나 랜섬웨어에 감염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등 불법 사이트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설명
악성코드 감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킨다. 이로써 사용자의 PC를 제어하거나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훔칠 수 있다.
랜섬웨어 감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랜섬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킨다. 이로써 사용자의 PC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불하도록 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들은 앞서 밝혔듯이 정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접속차단 시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하면 기존 사이트의 URL 주소만 바꿔 즉시 차단된 사이트를 활성화하거나, 기존 사이트와 유사한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설계하여 마치 동일한 브랜드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해외에 두어 국내에서 방심위가 사이트를 차단해도 사용자들이 VPN(Virtual Private Network), DNS(Domain Name System), 프록시 서버를 조작하여 차단된 원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바뀐 사이트 주소를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고지하여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국내 법망을 피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2.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 제공 방식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크게 영화, 방송, 스포츠 중계, 기타(성인 등)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OTT 저작물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사이트 내에서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제공되며, 메인화면에 인기 영상이 순위별로 배치되거나 최신 저작물이 배치되는 형태를 보인다. 사이트 내에는 대부분 검색 기능이 있어,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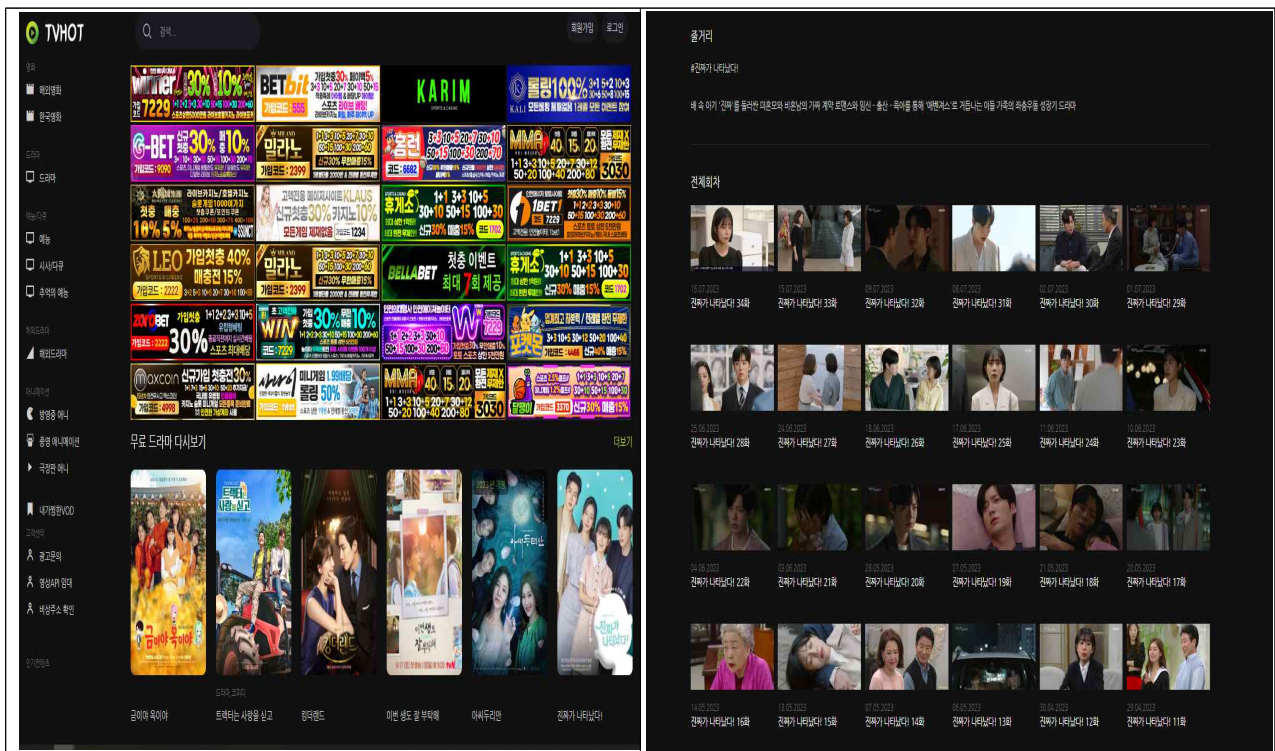
10) 애드네트워크 광고는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를 여러 개의 웹사이트에 동시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형태로 광고주와 웹사이트 소유자를 연결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경찰 농락하듯 또 등장한 누누티비... "광고 수익 차단이 최선. 2023.6.15. 조선일보 최희정 기자/2023.07.10 최종 열람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6/15/IHXTRM5IOFE2ZNVBTTKGKYDWG4/)



콘텐츠 카테고리는 세부적으로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국내 저작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저작물이 업로드되어 있다. 사이트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영상은 제목과 함께 개봉 연도나 장르, 회차 등으로 저작물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고 있고 상세페이지에 콘텐츠 등록일과 줄거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는 전체 회차를 함께 게시하여 드라마 한 편을 연속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최신작 영화, 최신 회차의 드라마는 개봉과 동시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거의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미개봉 영화나 각 OTT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저작물까지 제공하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합법 사이트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들은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영상 재생 시 버퍼링이나 중간 광고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메인화면, 상세페이지 모두 불법 광고 배너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여 이용자들은 영상을 시청하기까지 불법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 [그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메인화면 및 상세페이지



IV.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다양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행위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해당 장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다양한 행정조치 방안과 주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행정조치 방안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으로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우선 저작권법의 경우,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및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및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에 근거하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하여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2.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련 판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공중송신권에 대한 침해 여부이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7호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링크의 유형 중 임베디드 링크는 공중송신권을 ‘전송¹²⁾’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직접 링크와 같이 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행위는 침해 여부에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링크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기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에서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

12)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¹³⁾,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¹⁴⁾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상 판결에서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고 밝히며,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대상 판결은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러한 대상 판결은 이후 대법원 판결¹⁵⁾에 영향을 미쳐,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불법 링크 사이트 관련 주요 판례

- ✓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 인터넷 링크 중 이른바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1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1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

1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공2022상, 135]



- ✓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01 판결)
- ✓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V.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저작권 대응 현황

올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연신 일으키고 있는 ‘누누티비’는 2년간의 운영을 통해 누적 이용자는 약 8348만 명, 저작권 피해액은 전문가 추산 약 5조 원 규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누티비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수익은 최소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월 사용자수를 확보하던 누누티비는 방송업계의 공동 대응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지난 4월 14일 서비스를 공식 종료,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사이트를 폐쇄하였다. 정부에서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방심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불법성 여부가 확인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체 모니터링 및 외부 신고 등을 통해 신규 불법 사이트의 존재가 확인되면 권리사(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차단을 결정한다. 그리고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차단 요청하여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한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방심위에서 차단 의결한 사이트를 URL만 바꾸어 운영하는 대체사이트를 모니터링, 대체사이트를 찾아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검색포털(네이버, 구글)에 확인되는 불법 사이트 관련 검색어를 각 포털에 제한 요청하고, 국내 온라인 광고대행사 협조를 통해 불법사이트 내 게재된 광고를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회의를 개최하거나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내 영상 콘텐츠를 해외로 불법 송출한 조직을 인터폴, 현지 경찰과 협조하여 검거하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 공조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표]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년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조치 현황¹⁶⁾

구분	접속차단		광고차단		검색차단		
	요청 건	처리 건	요청 건	처리 건	국내 건 (네이버)	국외 건 (구글)	합계
‘22년(~12월)	903	476	1,391	745	3,280	20,251	23,531

16) 보호원에서 대응조치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에는 링크(스트리밍) 사이트 외에도 만화, 웹소설, 웹툰, 토렌트 또한 포함된다.



VI. 마치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은 6억달러로 2020년(1억 7000만 달러), 2021년 (4억 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¹⁷⁾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 등 K-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피지컬: 100’, ‘솔로지옥’ 등 K-예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한 ‘이태원 클라쓰’, ‘D.P 개의 날’ 등의 웹툰을 원작으로 2차 생산물이 제작되며 K-웹툰, K-웹소설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K-콘텐츠 시장과 함께 불법 사이트 시장이 동반 성장하며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근심 또한 높아져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커질수록 불법 복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며,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만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누누TV처럼 국내에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Contents Delivery Network)¹⁸⁾ 복제 서버(캐시서버)¹⁹⁾를 두는 불법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접속 차단할 수 있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가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불법 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한계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불법 사이트가 해외 CDN 사업자와 계약하여 그가 보유한 복제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만 바뀌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 내의 광고를 차단하여 운영자들의 주 수입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 그중의 하나이다. 영국이나 유럽연합, 미국은 광고 차단 업무에 권리자를 참여시키거나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시 경찰청 소속 지식재산범죄 전담 부서(PIPCU)를 설립하여 2014년부터 침해 웹사이트 목록 IWL(Infringing Website List)을 운영해왔다. PIPCU는 영국 광고업계, 저작권자 협회와 합작물로 가장 인기 높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인 IWL을 작성, 광고주들이 기피해야 할 불법 복제 사이트를 알려주는 일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등에게 IWL을 공유하여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의 자금을 고갈시켜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불법 복제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국가는 영국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저작권자와 권리자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창의적 미래’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Follow the Money”라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불법 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광고주에게 접촉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불응하는 광고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방법을 취한다. 유럽연합 역시 모조품 및 해적판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이라는 불법 복제물을 호스팅하는 사이트를 명단에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 사례들은 모

17) 한국은행, 2022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23, 1p

18)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각지에 분산형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최적화하여 콘텐츠 전송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ICT 시사상식)

19)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축적해서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서버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이다.(IT용어사전)



두 거시적인 관점에서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마지막으로 불법 복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노력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 전환도 매우 중요하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가 단순히 콘텐츠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고 콘텐츠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누누티비’는 사라졌지만 ‘제2의 누누티비’라 불리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의 전투를 위해서 앞서 기술한 다양한 노력 외에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작은 협력부터 함께 시작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

20) 조희경, 2022 하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Vol.38, 한국저작권보호원, 26~35p

